

의안번호	제927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발의자	최정훈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최정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7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 의 자 : 최정훈, 안지윤, 김국기,
박재주, 안치영, 오영탁,
조성태

1. 제안이유

- 도내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도지사 및 공직자의 책무 마련(안 제3조)
-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근거 마련(안 제5조)
-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및 포상 규정 마련(안 제10조 ~ 제12조)
- 청렴도 평가 관련 규정 마련(안 제13조 ~ 제15조)
- 청렴이행서약제 시행 및 운영관련 규정 마련(안 제16조 ~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

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관련 부서 : 감사관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조례안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충청북도 공무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청렴마일리지제”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

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기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조사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도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장 충청북도 청렴마일리지제

제10조(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 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 부문, 평가 기준,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성과관리 연계) 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청렴마일리지제 평가 결과를 부서 성과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북도 청렴도 평가

제13조(청렴도 평가)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기준) ① 도지사는 내·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 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결과)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청렴이행서약제

제16조(청렴이행서약제) 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

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이하 “청렴이행서약제”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출 시기)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6조제2항제1호: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

2. 제16조제2항제2호: 신규 채용시

3. 제16조제2항제3호: 매년 최초 보조금 교부결정시

제18조(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체결·이행 및 보조금 수령·집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교육 등)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 7.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조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청렴시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우대 조치 필요
- 부서별 실적 평가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으로 청렴의지 확산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 청렴마일리지제(제2장)

3. 관련조문

- 제11조(포상 및 시상) 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시상 부서 점진 확대 및 물가상승률 반영
- 조례안 제11조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액에 대한 비용 추계

나. 추계 결과 : 18,100천원 (연 사업당 최대 4,600천원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2,000	3,200	3,800	4,500	4,600	18,100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포상금		2,000 (6개부서)	3,200 (6개부서)	3,800 (6개부서)	4,500 (7개부서)	4,600 (7개부서)	18,100 (32개부서)
- 산출근거	- (최우수1)	- (최우수1)	- (최우수1)	- (최우수1)	- (최우수1)	- (최우수1)	
	500 X 1	700 X 1	800 X 1	900 X 1	1,000 X 1		
	- (우 수5)	- (우 수5)	- (우 수5)	- (우 수6)	- (우 수6)		
		300 X 5	500 X 5	600 X 5	600 X 6	600 X 6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	3,200	3,800	4,500	4,600	18,100
	지방세	2,000	3,200	3,800	4,500	4,600	18,1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2025년도 우수부서 포상 계획

- 예산현액 : 2,000천원(도비 100%)

- 사 업 량 : 6개 부서

※ 산출근거 : (최우수 1) 500천원 x 1개 부서 = 500천원

(우 수 5) 300천원 x 5개 부서 = 1,500천원

□ 우수부서 선발 기준

- 대상기간 : 2024. 12. ~ 2025. 10. ※ 평가시기 : 매년 11~12월

- 대상기관 : 전 부서(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소방 등 구분)

- 평가항목 : 청렴교육 이수실적, 청렴일일학습시스템 평가점수,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부패사건 위반 처분자 발생시 감점 등